

의안번호	제440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0월 24일

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44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2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은 농업기술원 내 기존 협소한 야외교육장을 확대 조성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실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
- 사업규모는 전천후 교육장 2,550㎡, 격납고 660㎡, 운전코스 및 교육생 대기실 2,000㎡이며, 사업비는 36억원임
-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은 제천소방서 청사 기존 출입로가 급커브·급경사로 되어 있고, 출입로 도로에 인근 건물 출입 차량의 노상주차로 출동의 어려움이 있어 제천시에서 대도로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제공할 예정임
- 이에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자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차고를 건축하여 대형차량 주차와 교육장 및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며, 사업규모는 지상 2층 520㎡이며, 사업비는 약 25.1억원임
-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》

일반회계

- 위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43-1, 443-2, 444, 445번지
-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- 사업규모 : 5,210㎡

- 사업비 : 36억원(국비 균특 50%, 도비 50%)
 - 시설비 3,419백만원(설계비 93백만원), 감리 및 기타 181백만원
- 사업내용 : 농업기계 전천후 교육장(2,550m²), 격납고(660m²), 운전코스 및 교육생 대기실(2,000m²) 조성

《제천소방서 차고 건축》

특별회계

- 위치 : 제천시 모산동 427, 429-1 ※ 부지는 제천시 제공
- 사업기간 : 2024. ~ 2025.
- 사업규모 : 철근콘크리트조, 지상 2층, 연면적 520m²

구 분	용 도	면 적
1층	차고, 심폐소생술교육장, 화장실	350m ²
2층	의용소방대 사무실	170m ²

- 사업비 : 약 25.1억원

(단위:천원)

계	공사비	설계비	감리비	시설부대비	농지전용비
2,509,069	1,936,359	98,092	410,571	18,447	45,600

3.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4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비고
	지목	소 재 지	면 적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2개동	3,210	3,450,000				
	기타	1식	2,000	150,000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43-1, 444, 445	3,210	3,450,000	2024	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(전천후 교육장, 격납고)		신축
	기타	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43-1, 443-2	2,000	150,000	2024	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(운전코스 및 대기실)		신축
2	토지	이하여백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특별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비고
	지목	소 재 지	면 적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1개동	520	2,509,069	2025			
	기타			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제천시 모산동 427, 429-1	520	2,509,069	2025	제천소방서 차고 건축		증축
	기타							
2	토지	이하여백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계법령발췌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0조의2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아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 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6천제곱미터 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 <p>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